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4. 20
- 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4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6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(98. 4. 2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웅국)

가. 제안이유

-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 성상의 종류를 생활폐기물로 한정하고, 계근방법의 개선 등 소각시설 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제반업무협의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소각시설운영협의회를 삭제하면서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아울러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성상을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로 한정

(안 제1조)

- 소각시설 계량카드 발급시 공차중량을 입력한 후 발급하던 제도를 폐기물 반입·출차시 매회마다 계근하여 산정토록 변경(안 제8조)
- 사업장 폐기물도 소각시설로 반입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8조)
-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을 정함(안 제11조)
- 환경상 영향의 조사·공개 및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 삭제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 제1조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정하려는 이유는?	○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생활폐기물로만 개정하려는 것임
○ 조례 제6조제6항의 협의회 구성을 삭제하는 이유는?	○ 법률에 협의회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중동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도 소각하는 관계로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된다는 주민진정 및 집단민원으로까지 확산되었던 사안으로서 본 개정조례로 생활폐기물만 소각토록 하는 조치와
-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는 신뢰를 갖도록 하는 조치로서 반대의견 없이 전원찬성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77호
의결년월일	98. 5. 2 (제60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4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 성상의 종류를 생활폐기물로 한정하고 계근방법의 개선 등 소각시설 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서 소각시설에 대한 제반 업무협의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소 각시설운영협의회를 삭제하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성상을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로 한정(안 제1조)
- 소각시설 계량카드 발급시 공차증량을 입력한 후 발급하던 제도를 폐기물의 반입·출차시 매 회마다 계근하여 산정토록 변경(안 제2조제6항, 제9조제4항)
- 사업장폐기물도 소각시설로 반입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8조)

-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을 정함(안 제11조)
- 환경상 영향의 조사·공개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의 삭제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본문중 “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”을 “생활폐기물 중”으로 한다.

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2호·동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2호 중 “중동신도시”를 “중동신시가지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소각으로 인한”을 “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6조중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중 “제2조제4호”를 “제2조제3호 및 제4호”로 하고, “지정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중 “폐기물반입시”를 “폐기물반입 및 출차시 매회”로 하고,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주민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,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부천시일용인부임지급지침을 적용하며 수당은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다. 다만, 노임단가는 사무보조·청사관리 등의 인부임으로 한다.

③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·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(이하 “소각시설”이라 한다)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(이하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생활폐 기물 중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정의) (생략) ① ~ ⑤(생략) ⑥ “공차중량”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① ~ ⑤(현행과 같음) (삭제)
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 소각시설에서는 중동신도시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. 다만, 각호의 경우에는 중동신도시 이외의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중동신도시지역 가연성폐기물 중 배출량이 소각시설용량에 미달될 경우 ② 시장은 중동신도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시가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중동신도시 가연성폐기물이 1일 200톤을 초과 배출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3. (생략)	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 ----- -----중동신시가지----- ----- -----중동신시가지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중동신시가지 ----- ----- ② -----중동신시가지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중동신시가지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5조(폐기물의 분리) 시장은 <u>지정폐기물</u> 및 <u>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</u> 을 분리하여 <u>지정폐기물소각으로 인한 공해발생예방과 재활용품</u>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제5조(폐기물의 분리) ----- <u>폐기물</u> 을 분리하여 <u>소각함으로써</u> -----
제6조(소각시설운영 등) ① ~ ④(생략)	제6조(소각시설운영 등) ① ~ ④(현행과 같음)
⑤시장은 <u>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6개월마다 주민이 원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, 소각시설 대기공해 배출치가 국가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</u>	(삭제)
⑥시장은 <u>소각시설 운영에 주요사항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, 주민 3인,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, 부천시의회의원 2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.</u>	(삭제)
제8조(반입의 제한) ①(생략)	제8조(반입의 제한) ①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<u>지정폐기물</u> 을 반입하는 경우	2. ----- 제2조제3호 및 제4호 ----- ----- <u>폐기물</u> -----
3. ~ 5(생략)	3. ~ 5.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③시장은 <u>지역주민 상주감시원이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	(삭제)
④(생략)	③(현행 제4항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) ① ~ ③ (생략)	제9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) ① ~ ③(현 행과 같음)
④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.	④-----폐기물 반입 및 출차시 매 회-----
⑤제2항에 의한 계량카드 발급시 시장은 폐 기물운반차량에 반드시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.	(삭제)
제11조(상주감시원 고용) 시장은 소각시설의 반입, 적하, 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직 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인근지역 주민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하 여야 한다. 다만, 인근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1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시장은 지원협의 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주민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,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부천시일용인부임지급지침을 적용 하며 수당은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다. 다만, 노임단가는 사무보조·청사관 리 등의 인부임으로 한다. ③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 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(이하 “소각시설”이라 한다)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(이하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한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소각시설”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상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②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.
- ③ “소각시설사용자”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자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④ “폐기물운반차량”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.
- ⑤ “열공급시설”이라 함은 소각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, 증기 및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⑥ 삭제

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종류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에 한하며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등) ① 소각시설에서는 중동신시가지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. 다만, 각호의 경우에는 중동신시가지 이외의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.

1. 부천시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구청장이 직접 수거하고자 할 경우
2. 중동신시가지 지역 가연성폐기물 중 배출량이 소각시설 용량에 미달될 경우
- ② 시장은 중동신시가지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시가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.
 1.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
 2. 중동신시가지 가연성폐기물이 1일 200톤을 초과 배출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한 경우
 3. 소각시설의 보수·점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

제5조(폐기물의 분리) 시장은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공해발생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

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각시설 운영 등) ①소각시설은 부천시가 직영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“별표8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③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④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·점검하여 공해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⑤삭제

⑥삭제

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구청장 및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(수집·운반업) 허가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②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반입의 제한) ①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
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
3.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
4.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
5.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
③삭제

④제1항제5호에 의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) ※①제7조제1항에 의한 반입허가 대상자로서 소각시설을 사용코

자 하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(이하 “출입증”이라 한다) 및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(이하 “계량카드”라 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③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,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. 다만, 무단투기물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출차시 매회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삭제

제10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) ①소각시설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미신청시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된 경우
3.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
4.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

제11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주민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,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부천시일용인부임지급지침을 적용하며, 수당은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다. 다만 노임단가는 사무보조, 청사관리 등의 인부임으로 한다.

③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2조(소각열이용) ①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,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, 공급조건, 판매요금,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.

제13조(관리운영의 위탁)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각호와 같다.

1.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2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
3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
4.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
5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
②소각시설의 위(수)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

제14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·운영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·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